

미편집 버전

Distr.: 일반
2025. 05. 09.
원본: 영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¹

1. 위원회는 2025년 4월 29일과 30일에 개최된 3149차 및 3150차 회의에서 하나의 문서로 제출된 대한민국의 제20-제22차 통합 정기보고서(CERD/C/KOR/20-22)를 검토하였다(CERD/C/SR.3149 및 3150 참조). 2025년 5월 7일에 개최된 3160차회의에서 본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A. 서론

2. 위원회는 당사국의 제20-22차 정기보고서 제출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또한 고위급 대표단과 나눈 건설적 대화를 환영하며, 위원회가 보고서를 검토하는 동안 그리고 대화가 끝난 후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

B.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 국제 인권 조약을 비준한 것을 환영한다:
- (a) 2023년 1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
 - (b) 2022년 12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c) 2021년 4월, 국제노동기구 1930년 강제노동협약(제29호).
4.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취한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조치를 환영한다:
- (a) 2021년 4월에 채택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
 - (b) 2018년 12월에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c) 2023년 7월 내국인의 출생등록제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d)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23~2027년) 채택;
 - (e)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23~2027) 채택.

C. 우려 사항 및 권장 사항

통계

5. 원회는 2022 년 업데이트 된 핵심 문서를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한 통계에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인구의 인구학적 구성에 대한 포괄적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당사국이 민족 또는 민족-종교적 정체성과 관련된 데이터와 이주민, 난민신청자 및 난민과 같은 다양한 인구 집단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¹ 제115차 회의(2025년 4월 22일~5월 9일)에서 위원회가 채택함.

않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통계의 부재로 인해 인종차별에 노출된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제1조, 제2조 및 제5조)의 시행으로 달성한 진전을 포함하여 인종차별에 노출된 집단의 상황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역량이 제한되고 있다.

6. 위원회는 협약 제1조 제1항 및 제4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일반권고 제8호(1990)와 협약에 따른 보고 지침을 상기하면서, 당사국이 민족 및 민족-종교 집단, 아프리카계, 무국적자 및 비시민권자, 특히 이주민, 난민신청자 및 난민에 대한 인구의 인구학적 구성에 관한 신뢰할 수 있고 최신이며 포괄적인 통계를 자기 식별 원칙에 따라 수집하여 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은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평등한 향유를 평가하기 위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집단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교육, 고용, 의료 및 주거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 성별과 연령별로 세분화된 통계를 작성할 것을 권고한다.

국내법 상 협약

7.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이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법절차에서 협약이 거의 인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8.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판사, 검사, 변호사 및 출입국 공무원을 포함한 법 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내 법원에서 협약의 조항이 관련될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당사국이 다음 정기 보고서에 국내 법원의 협약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국가인권기구

9.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사국의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면서도, 위원회의 위원 선정 및 임명을 위한 독립적인 단일 인선위원회 구성을 오랫동안 의무화하지 못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효과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10. 당사국은 후보자 추천을 위한 독립적인 단일 위원회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임명에 있어 완전히 투명하고 능력에 기반하며 참여적인 절차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종 차별 금지

11. 위원회는 이전 권고(CERD/C/KOR/CO/17-19, 5-6항)를 반복하면서, 당사국이 여전히 협약 제1조에 규정된 모든 금지된 차별 사유에 대해 직·간접적인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령을 채택하지 않은 것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의 법령이 위원회의 일반 권고 제30호(2004), [3-4항]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로 협약 제5조에 규정된 여러 권리에 대한 동등한 향유를 제한하는 것을 우려한다 (제 1, 2, 5조).

12. 위원회는 이전 권고를 반복하면서, 당사국이 협약 제1조에 따라 모든 금지된 사유에 대한 직·간접적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신속히 채택하여 공공 및 사적 영역에서 직·간접적이고 교차하는 형태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기존 법령에 있는 비시민권자의 동등한 권리 향유에 대한 모든 제한이 위원회의 일반 권고 제30호(2004)(3-4항)에서 해석한 대로 협약을 완전히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사국이 기존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국은 차별적 대우가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판단할 때 그러한 차별의 기준이 정당한 목적에 따라 적용되지 않거나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협약에 따라 차별을 구성한다는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인종 차별에 대한 진정

13.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관련된 진정을 접수 및 조사하고 권고 및 회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추가 조치를 위해 당국에 회부된 진정을 포함하여 그러한 진정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여,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유감을 표명한다(제6조).

14.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검사, 경찰관 및 기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인종

차별 사건의 식별 및 문서화, 그러한 차별에 노출된 집단의 상황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 (b) 이주민, 난민신청자 및 국제 보호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캠페인을 포함하여 협약에 명시된 권리와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인종 차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대중 교육 캠페인을 실시;
- (c)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인종 차별에 대한 진정과 추가 조치를 위해 당국에 회부된 진정을 포함한 진정 결과에 대해 연령, 성별, 민족 및 출신 국가별로 세분화된 통계를 수집하고, 수행된 조사, 부과된 행정 및 형사 제재, 피해자 배상에 대한 상세하고 세분화된 정보를 포함하여 다음 정기 보고서에 이러한 통계를 제공.

혐오 표현 및 증오 범죄

15. 위원회는 이전 권고(5-8항)를 상기하며, 특히 이주민, 난민신청자 및 난민, 중국계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한다. 위원회는 대구시의 모스크 건립에 대한 저항과 관련하여 무슬림 커뮤니티에 대한 혐오 발언과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구금하고 위협하며 그러한 학대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단체에 대한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 및 제1조에서 인정한 모든 근거에 따라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과 증오 범죄를 명시적으로 범죄화하는 조항이 여전히 법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적 동기를 형사 관련한 가장 정황으로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이전 권고(5-6항)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또한 인종적 동기에 의한 범죄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과 같은 일반 형사 범죄로만 분류되고 기록되어 통계가 수집되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제2, 4, 7조).

16. 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 이행에 관한 일반 권고 제7호(1985년),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에 관한 제15호(1993년), 인종차별적 증오 표현에 대한 제35호(2013년)를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 (a)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에서 인정하는 모든 인종차별 사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형사 범죄와 관련하여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장 정황으로 포함하도록 형법을 지체 없이 개정하고, 협약 제4조에 따라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 및 증오 범죄의 명시적 범죄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입법을 채택;
- (b) 정치인과 공인에 의한 표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혐오 표현을 단호히 규탄하고 그러한 행위가 조사되고 적절히 처벌되도록 하며, 법 집행 공무원, 검사 및 판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의 식별, 등록 및 기소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
- (c) 이주민, 난민신청자, 난민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없애기 위한 공공 교육 캠페인을 실시;
- (d) 언론 매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언론,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서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표현의 확산을 막고,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인종차별 또는 외국인 혐오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며, 방송법 등 적절한 제재를 통해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표현이 체계적으로 처벌되도록 노력을 강화;
- (e) 채널 신고에 관하여 관련 언어로 된 주요 대중에 대한 교육 캠페인을 포함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 및 증오 범죄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와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차별적 태도를 식별하고 예방하는 조치;
- (f) 인종적 동기에 의한 범죄에 대한 통계를 인종, 피부색,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체류 자격, 성별 및 교차하는 형태의 차별을 기타 식별 지표별로 세분화하여 수집하는 메커니즘을 구축.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진정, 수사, 기소, 가해자에게 부과된 유죄 판결 및 제재, 피해자 제공 배상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다음 정기 보고서에 관련 통계를 포함;
- (g)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중재를 포함하여 대구 모스크 건설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증오를 조장하는 현수막의 신속한 철거를 포함하여 관련 인종차별 또는 외국인 혐오 발언에 효과적으로 대응.

이주 노동자

17. 위원회는 취업 비자 제도 및 적용 가능한 노동 기준과 관련하여 이주 노동 규제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의 허용 사유가 확대되고, 2017년 이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에 따라 비숙련 비자 범주에서 숙련 비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소폭의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여전히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이 장기 또는 영주 체류자격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비정규 체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가족 재결합 또는 동반이 여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숙련 노동자 중에서도 과도한 소득 및 체류 안정성 요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제5조).

18. 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해 고용허가제 및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기타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다음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a)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할 것;
- (b) 특히 비숙련 노동자에 대해 최대 체류 가능 기간을 연장할 것;
- (c) 이주노동자가 다른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보다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
- (d) 숙련 및 비숙련 이주노동자 모두의 가족 재결합 또는 동반을 용이하게 하고, 그 가족 구성원에게 노동시장 접근을 허용할 것.

19. 위원회는 당사국의 일부 노동법제가 이주노동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차별하고, 노동 보호 기준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우려한다:

- (a) 선원에 대한 부문별 규정으로 인해 이주 선원이 내국인에게 보장되는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허용하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음;
- (b)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일 기준이 면제되는 부문이 농업, 축산업, 어업 등 다수의 이주노동자가 고용되는 업종으로,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착취에 노출됨;
- (c) 이주노동자가 특히 체불임금 형태로 임금 착취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임금 체불을 겪는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매우 높음;
- (d) 이주노동자가 여전히 기준 미달의 주거 환경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4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6.7%가 비거주용 시설에 거주하고 있음. 2020년 12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 사건 이후 도입된 건축 인증 제도는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e) 이주노동자가 위험한 직종에 불균형적으로 고용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이들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내국인의 두 배에 달함. 당사국의 일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기준이 불충분하고, 산재보상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산재 사망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흡함;
- (f)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 언어 장벽, 법 제도 및 법률 지원에 대한 인식 부족,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보상 자격 제한 등 복합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보상을 받는 데 구조적인 장벽에 직면해 있음(제5조).

20. 비시민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 권고 제30호(2004)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기준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노동법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이주 선원이 최저임금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이주 선원이 실질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b) 농업, 축산업, 어업 등 이주노동자가 다수 고용된 부문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일관된 노동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

- (c) 이주노동자의 높은 임금체불 비율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법적 청구 절차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d)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여 이주노동자에게 비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농업 부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강력한 건축 인증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등 적절한 주거 환경을 보장할 것;
- (e)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산업안전 기준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며, 이주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산업안전 교육을 제공할 것;
- (f) 노동권 침해나 산업재해를 겪은 이주노동자에게 실효적인 구제 및 보상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사망사고의 피해자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출 것;
- (g) 상담 및 통역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 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히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과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것;
- (h) 다음 국가보고서에 노동 감독 기관의 방문 통계, 피해자의 국적별 자료, 확인된 위반 사항 유형, 부과된 제재, 피해자에게 제공된 배상금 등의 정보를 포함할 것;
- (i) 모든 분야의 이주노동자 대표들과 제도적 대화를 수립하여 인종차별 대응의 모범 사례를 발굴할 것.

미등록 이주민

21. 당사국이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당사국 내 미등록 이주민의 수가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우려한다:

- (a) 정규 이주 경로의 부족, 비숙련 취업비자의 짧은 체류기간,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이 결합되어 구조적으로 많은 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발생하고 있음;
- (b) 당사국이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 대한 억제 중심의 접근을 지속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경찰과 출입국 공무원에 의한 부상 또는 일부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c)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이 미등록 이주민을 인지한 경우 출입국 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기본적 인권 보호 또는 범죄 피해자 구제에 국한되어 있어, 임금 체불 등 권리 침해를 신고한 미등록 이주민이 구금 및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음(제5조 및 제6조).

2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미등록 이주민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조사하고, 정규 이주 경로를 확대하며, 정규화 경로를 마련할 것;
- (b) 혐오범죄, 노동권 침해 및 기타 착취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여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것;
- (c)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해당 단속에 참여하는 경찰과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무력 사용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
- (d) 공무원의 출입국 당국 통보의무에 대한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미등록 이주민이 노동권 침해 또는 위기 상황을 신고하는 경우 출입국 당국에 통보되지 않도록 할 것;
- (e) 공식 문서에서 ‘불법 체류자’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법률 및 규정 내 관련 표현을 삭제할 것;
- (f) 단속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이주민에 대한 통계와 배상을 포함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공개할 것.

교육 접근

23. 위원회는 이전 권고사항(29-30 항)을 상기하며, 당사국이 이주아동의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조치를 취한 점에도 불구하고, 이주아동이 여전히 모든 교육 단계에서 다양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이 여전히 비시민권 아동을 당사국의 의무교육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한다.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은 국적에 관계없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위원회는 해당 지원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주아동에 대한 재정지원이 임시적이고 일관되지 않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여전히 입학 절차에서, 특히 고등학교 수준에서 과도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서류 요구 등으로 인해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장기 체류 기준을 충족하거나 공교육을 이수 중인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대책은 환영하지만, 이 대책의 혜택을 받은 아동이 소수에 불과하고, 이 대책이 임시적이라는 점은 유감이다. 위원회는 또한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가족방문 또는 동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아동이 고등교육을 받을 경우 유학비자(D-2)를 신청해야 하며, 해당 비자에 필요한 높은 재정 보증 요건으로 인해 이주 및 난민 아동의 대학 진학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제1, 2 및 5조).

24.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의무 교육을 보장할 것;
- (b) 학교 입학을 용이하게 하고 자의적인 입학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주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c) 아동의 체류자격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유아 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지원 조치를 시행할 것;
- (d) 이주아동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및 확대할 것;
- (e) 이주아동의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여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

사회보장 접근

25. 이전 권고사항(29-30항)을 상기하며, 위원회는 여전히 많은 비시민권자가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아동 및 장애인도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일부 특정 범주의 비시민권자에 대해 자격이 확대된 점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장기본법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제한적 적용에 대해 우려하며, 상호주의 원칙이 특히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거부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2023년 6월부터 계절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확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임시비자 이주민,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보호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와 그 가족의 건강보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당사국의 단편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난민신청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특히 우려한다(제1조, 제2조 및 제5조).

26. 위원회는 이전 권고를 반복하며, 당사국이 사회보장 정책을 재검토하고,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당사국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사회적 지원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비시민권자에 대한 사회보장기본법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용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근거로 제한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장애가 있는 비시민권자가 실질적으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건강보험 접근을 규율하는 현행 단편적 체계 단순화하고, 세대원 관련 기준을 포함한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며, 보험료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주구금

27. 위원회는 2025년 3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특정 사건의 경우 2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9개월의 구금 기한의 상한과, 법무부 내 위원회(“외국인보호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여 구금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제도를 2025년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구금 기한 상한의 도입은 긍정적이나,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난민신청자를 포함하여 장기 구금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호일시 해제된 사람들에게 법적 지위가 제공되지 않아 재구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구금된 상태에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최대

20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는 등 난민신청자의 구금 기한을 더 길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절차에의 접근이 거부된 신청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실상 그리고 장기간 구금되는 것에 우려한다.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구성안에 대한 정부 대표단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보호 명령에 대해 신속하고 독립적이며 효과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이 기구의 역량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의 법 체계가 아동 최상의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아동의 구금을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

2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이주구금은 가능한 최소의 기간 동안,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며; 난민신청자를 최장 20개월간 구금할 수 있는 현재 법 조항을 개정할 것;
- (b) 이주구금의 적법성이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사법 기관에 의해 심사되도록 보장할 것;
- (c) 보호일시 해제된 사람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 (d) 구금된 외국인에게 이의 신청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구금에 대한 절차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신속하게 알리고, 구금된 기간 동안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법적 지원과 통번역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e) 외국인보호소와 사실상 구금 장소로 이용되는 출입국항의 환경과 생활 조건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f)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14세 이상의 아동의 구금 또한 금지하고, 보호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는 경우 외국인보호소장으로 하여금 아동을 부모와 함께 구금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보호규칙 제4조를 개정하며, 이러한 경우 구금 대신 비구금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아동의 이주구금을 근절해야 하고; 출입국항에서도 아동을 사실상 구금하지 않도록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

난민

29. 위원회는 지난 권고(14-15항)를 상기하며,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국제적인 보호 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당사국의 난민인정절차 및 시스템에 대한 역량,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의 적절성 및 제공되는 생계 지원의 적절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우려한다:

- (a) 적은 인력, 충분한 교육을 받은 심사관의 부족, 난민인정 불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난민위원회의 독립성 및 역량과 이로 인해 지나치게 길어지는 사건 처리 기간과 개별 심사에 대한 시스템의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점;
- (b) 난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게 불회부 결정을 하여 난민인정절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이의 신청 또는 행정 소송을 통해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률 지원에 접근이 제한되는 점;
- (c)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의무의 예외를 판단하는 법무부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충분히 제한되지 않으며, 국제적인 보호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강제송환 명령이 발부되고 있다는 보고;
- (d) 위원회 보고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을 포함하여, 강제송환되었다고 보고된 사례;
- (e) 인도적체류지위 부여 비율을 포함하더라도 낮은 난민인정 비율;
- (f) 난민법 제40조에 따른 생계비 지원이 난민신청자 중 오직 1-2%만이, 그것도 단 3개월 동안만 제공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난민신청자의 취업 허가, 의료 서비스와 기초 생활 지원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법적 제한 및 실질적 장애물;
- (g) 특히 가족결합과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많은 인도적체류자가 주거 및 생계를 위해 NGO에 의존해야 하는 등 인도적체류자의 권리가 난민인정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점. (제 5조 및 제6조).

30.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난민신청에 대한 개별 심사를 위해 적절히 훈련받은 공무원을 충분한 숫자로 배치하고,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난민위원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등 난민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연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 (b) 난민신청자가 출입국장에서 난민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투명한 난민인정절차 및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하는 등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을 보장할 것;
- (c) 난민 신청에 대해 전체 건수,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받은 건수를 포함한 전체 건수 등을 국적별로 세분화하여 전체 통계를 수립하고 발표할 것;
- (d)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체류자가 취업 허가, 필수 의료 서비스, 기초 생활 지원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법 및 정책, 실무 관행을 개선할 것;
- (e) 인도적체류자에게 가족결합권을 부여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 북한이탈주민이 직면한 차별

31. 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법상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난민법에 따른 송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국가 재정의 지원에 주목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교육과 취업 등의 영역에서 낙인 및 사회적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제2조 및 제5조).

32. 위원회는 당사국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국내법에 명문화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교육 및 고용 접근성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직면하는 낙인과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주 여성

33. 위원회는 지난 권고(21-22항)를 상기하며, 대다수가 여성인 “결혼이주민”에게 부과된 제한이 자의적이며, 이들이 평등과 비차별의 권리를 침해 받게 하는 체계적인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여전히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예를 들어, 혼인의 해소 이후 “결혼이주민”이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확보하는 데 계속적으로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많은 결혼이주민이 한국 국적의 자녀의 유무와 관계 없이, 언어 및 관료적 장벽과 높은 수수료 등의 이유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추가적으로 “결혼이주민”이 배우자에 의존해야 하는 체류자격으로 인해 젠더기반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제2조 및 제5조).

34.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 (a) “결혼이주민”들이 혼인 해소 사유, 아동의 양육, 배우자의 부모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영주권 및 귀화 절차를 간소화할 것;
- (b) 이주 여성이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젠더기반 폭력을 신고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c) 다양한 출신국으로 귀환한 “결혼이주민” 여성과 그들의 자녀의 규모와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이들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인신매매

35. 위원회는 2021년,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당사국이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 및 보호하며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노동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당사국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존재하고, 피해자 식별이 여전히 부족하며,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의 수가 적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고용주에 의한 신분증 압수 등의 관행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노동 착취 및 강제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인신매매 피해자의

식별보다 합법적인 체류자격 확인을 우선하여 성착취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가 적절한 식별 절차 없이 추방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

3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인신매매와 관련된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처벌 조항을 적절하게 추가하고, 인신매매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수정하는 등 형법과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할 것;
- (b) 모든 인신매매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가해자가 적절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c) 출입국 공무원과 법 집행 기관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이주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 피해자식별지표 사용을 의무화할 것;
- (d) 성착취 피해자를 포함한 인신매매 피해자가 범죄 수사 또는 기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
- (e)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된 이주민이 최소한 적절한 의료 및 심리 지원을 받거나 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제공할 것;
- (f) 인신매매 피해 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

재난 및 보건 응급 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처우

37. 위원회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검사 및 백신 접종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당사국의 노력에 주목하면서, 등록 이주민에 제한된 긴급 재난 구호 자금 지원 자격, 이주 노동자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는 특정 지방 정부의 행정 명령 등 당사국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이주민이 일부 차별적 정책의 대상이 되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초기에는 입국 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무료 진료를 제공하였지만, 이후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면서 이주민의 동등한 접근이 제한되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당사국은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례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 위원회는 심리상담 지원, 서류 발급 지원 등 유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영역에서 미흡한 점이 보고되었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 계획 매뉴얼의 피해 평가 및 복구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지만, 이 정책이 미등록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제2조 및 제5조).

38. 당사국은 재난 및 보건 비상 상황에서 비시민권자(non-citizens)가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재난 대비 및 대응 체계에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관련 언어로 된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보장 및 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재정 지원, 건강 관리 및 심리적 지원 제공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비국민(non-nationals)이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동등하고 차별 없이 보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외국인 유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생 등록

39. 위원회는 이전 권고(27-28항)를 상기하며, 외국 출신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이 국내 법상 출생 등록 시스템에 등록될 수 없거나 부모가 여러 가지 이유로 출신국 대사관에 자녀의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시스템 상 등록되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보편적 출생 등록제도를 도입하려는 당사국의 의지를 환영하는 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제1조, 제2조 및 제5조).

40.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편적 출생 등록에 관한 법률을 신속하게 채택하여 당사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국적 및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등록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체류 자격 및 시민권을 확보하는 경로

41. 위원회는 비시민권자가 안전한 체류 자격 또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단기 비자를 소지한 이주민과 그 가족, 결혼 이주자, 난민 및 인도적 보호 지위 체류자(제2조 및 제5조)들이 당사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들 중 극소수의 비시민권자만이 안전한 체류자격

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미등록 체류 상황에서 이주민인 부모에 의해 당사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아동을 위한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단이 부족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42.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기 체류 자격 및 귀화에 적용되는 법률과 정책을 검토하여 다음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 (a) 당사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거주한 비시민권자의 장기 체류 자격 및 귀화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국은 현행 비자 시스템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화롭게 할 것을 고려할 것;
- (b) 미등록 체류 중 이주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과 청소년에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로를 제공하여 체류 자격 또는 귀화 자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무국적자

43. 위원회는 시민권을 부여 받지 못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북한이탈주민들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적 불명의 아동의 상황을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무국적자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상황에 주목하면서, 무국적자의 인정 및 처우와 관련된 법률이나 절차의 부재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부재가 법적 지위, 서류 및/또는 신분 부족으로 인한 무국적자의 취약성을 높이고, 이주 구금 및 강제 추방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제2조 및 제5조).

44. 위원회는 당사국이 무국적자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1954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을 포함하여 무국적자의 지위와 처우를 정의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당사국은 1961년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편견과 불관용에 맞서기 위한 훈련, 교육 및 기타 조치

45. 위원회는 당사국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주민의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 다문화 감수성 등의 인권 교육을 것을 환영한다. 또한 교육 시스템 내에서 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주민, 난민 신청자 및 난민을 포함한 비시민권자를 향한 인종차별적 고정관념과 외국인 혐오가 만연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제7조).

46. 위원회는 당사국이 일반 대중, 공무원, 법 집행 공무원, 및 사법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민족 및 문화적 다양성 존중, 관용, 인종 간 이해 및 비시민권자의 사회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을 측정가능한 결과물로 실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당사국은 또한 이주 및 난민 아동에 대한 배제와 인종 차별을 줄이기 위해 모든 학교에서 문화 다양성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D. 기타 권고 사항

기타 조약 비준

47. 위원회는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을 고려하여, 당사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 특히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포함하여 인종차별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항이 있는 조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제노동기구의 1961년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과 2011년 가사노동자 협약(189호)을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더반 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 후속 조치

48. 위원회는 더반 검토회의의 후속 조치에 관한 일반 권고 33호(2009)에 비추어, 당사국이 국내 법체계에서 협약을 이행할 때, 2001년 9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관련 편협에 대한 세계 회의에서 채택한 더반 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을 2009년 4월 더반 검토회의의 결과 문서를 고려하여 발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더반 선언과 행동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해 행동 계획 및 기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음 정기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아프리카계를 위한 국제 10년

49. 총회는 결의안 79/193을 통해 2025~2034년을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위한 제2회 국제

10년으로 선포하였다. 또한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보호 및 성취를 촉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장하기 위해 결의안 69/16에서 채택된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위한 국제 10년'의 이행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발전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프리카계 사람들과 협력하여 활동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아프리카계 사람들에 대한 인종 차별에 관한 일반 권고 34호(2011)를 고려하여 그 틀에서 채택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정보를 다음 정기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시민 사회와의 협의

50.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 정기 보고서 준비 및 본 최종견해의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인권 보호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특히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화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정보 배포

51.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가 제출 시점에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결론적 견해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협약의 이행을 위임받은 모든 국가기관에 공식 및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적절하게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중요한 단락

52. 위원회는 상기 12항(인종차별 금지), 16항(증오표현 및 증오범죄), 22항(미등록 이주민), 28항(이주주구금), 30항(난민), 42항(체류자격 및 시민권 확보 경로)에 포함된 권고의 특별한 중요성에 대해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며, 이러한 권고 이행을 위해 당사국이 다음 정기보고서에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현재 결론에 대한 후속 조치

53. 협약 제9조 제1항 및 절차규칙 제65조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최종견해 채택 후 1년 이내에 상기 제10항(국가인권기구), (g)(대구 모스크 건설 지연 해결을 위한 정부 주도의 중재 절차) 및 제40항(출생 등록)에 포함된 권고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54.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전 최종견해에 대한 마지막 후속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다음 정기 보고서 준비

55.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71차 회기 위원회가 채택한 보고 지침²을 고려하고 본 최종견해에서 제기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제23차~제26차정기보고서를 하나의 문서로 2030년 1월 4일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 결의 68/268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이 정기 보고서의 경우 21,200 단어, 공통 핵심 문서의 경우 42,400 단어의 제한을 준수 할 것을 촉구한다.

² [CERD/C/2007/1](#).